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광역BRT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24일에서 2025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2. ~ 1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의 “2023년 1월 24일까지”를 “2025년 1월 24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광역BRT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30일까지 별표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둔다.

별표 2, 별표 3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

(제16조제1항 관련)

총계	136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135
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13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7조 관련)

1. 제1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월 24일)

총계	3
일반직 계	3
6급 이하	3

2. 제17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3. 제17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6급 이하	1

4. 제17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1월 3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24일까지 별 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② ~ ③ (생략) <u><신설></u>	제17조(한시정원) ① ----- ----- ----- ---- 2025년 1월 24일까지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광역BRT 확충 업무를 지원 하기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 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37	136	-1
·	·	·	
·	·	·	
일반직 계	136	135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132	131	-1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7조 관련)

구분	존속기간		정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제1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	2023년 1월 24일	2025년 1월 24일	3	3
·	·	·		
·	·	·		
4. 제17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	-	2025년 11월 30일	-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